- (6) 파이프받침 형식일 경우에는 다음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파이프받침의 높이가 3.5미터 이상일 때에는 2미터마다 양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방향 10미터이내마다 교차가새를 설치하 여 좌굴 및 비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.
 - (나) 경사진 바닥에 파이프받침을 설치할 때에는 하단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 - (다)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,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 - (라)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으며, 이 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.
 - (마)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받이판에 못으로 2개소 이 상을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들림으로 인한 동바리의 넘어짐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(7) 조립강주 형식일 경우에는 다음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에 고정시킬 것.
 - (나)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.
- (8) 시스템 동바리일 경우에는 다음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하며,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 게 설치할 것.
 - (나)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,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꺽어지지 않도록 할 것.
 - (다)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.
 - (라)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칙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할 것.